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6. 30.(수) 16: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4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2010-37-147)

○ 석제범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 과 지식경제부의 「201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별	'10예산 (A)	'11년도		증감 ('10년대비)		
			지출 한도	요구안(B)	B-A	%	
세입(안)	< 합 계 >	6,166	-	5,886	△280	△4.5	
	▪ 일반회계	3,504	-	2,974	△530	△15.1	
	▪ 방송발전기금	2,662	-	2,912	250	9.4	
세출(안)	< 합 계 >	5,983	6,020	6,092	109	1.8	
	▪ 예산	소 계	3,321	3,180	3,180	△141	△4.3
		(일반회계)	3,256	3,067	3,067	△189	△5.8
		(혁특회계)	65	113	113	48	73.8
	▪ 방송발전기금 (사업비)	2,031	1,929	1,929	△102	△5.0	
	* 총규모(내부거래 포함)	(2,662)	(2,840)	(2,912)	(250)	(9.4)	
※ 정보통신진흥기금	<3,155>	-	<3,004>*	<△151>	<△4.8>		

※ '1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세출(안) 3,004억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단독사업 규모는 1,254억원 ('10년 1,322억원), 지식경제부와의 공동사업 규모는 1,750억원('10년 1,833억원)임

② 2011년도 세입 예산안

▶ 그 동안의 세입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5,886억원을 편성 했으며, 이는 '10년도 6,166억원보다 4.5% 감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 '11년 세입은 2,974억원으로 '10년대비 530억원(△15.1%) 감액

·주 세입원인 전파사용료가 감소하고, 홈네트워크 용자사업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이 상환 완료됨에 따라 '10년 대비 530억원 감액 편성

- (방송발전기금) '11년 세입은 2,912억원으로 '10년대비 250억원(9.4%) 증액
·방송사업자의 법정부담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년 대비 250억원 증액 편성

③ 2011년도 세출 예산안

- ▶ 총 6,092억원으로 편성하여 '10년 대비(5,983억원) 1.8% 증액된 규모임
- (기본 편성 방향)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 '신성장동력 확충', '경제활성화 기여' 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
- (일반회계)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등에 총 3,067억원을 편성 ('10년 3,256억원 대비 5.8% 감소)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파연구소의 지방 이전(서울→나주) 준비를 위한 청사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113억원을 편성 ('10년 65억원 대비 73.8% 증가)
-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촉진', '방송진흥 기반 구축', '방송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등에 총 2,912억원을 편성 ('10년 2,662억원 대비 9.4% 증가)

2)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안)에 관한 건 (2010-37-148)

○ 오남석 전파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11.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방향(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10. 4월, KT가 900MHz대역 20MHz폭을 할당받기로 결정됨에 따라 KT가 보유한 1.8GHz 대역 40MHz폭 중 우선적으로 최소 20MHz폭 회수를 통지

※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 의결('08. 12월) 시, KT가 저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1.8GHz 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로 함

② TRS*, 무선호출 등 여타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과급효과가 크거나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매가 아니라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

- 다만,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술진화도 거의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기간을 5년으로 짧게 부여

* TRS : Trunked Radio Service(주파수공용통신)

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0-37-149)

- 오남석 전파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펨토셀 기지국*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펨토셀 기지국 : 100조분의 1(10^{-15})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커버리지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서, 가정·사무실 등 옥내 지상·지하의 작은 지역(30~50m)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

○ 주요 내용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유형”에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신설
- 주파수는 전기통신 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함
- 펨토셀의 위치, 출력, 주파수 등에 대한 자료를 반기별로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함

4)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건 (2010-37-150)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4개 방송사업자의 4개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심사대상

신청인	신청일자	대표자	신청 방송국명
(재)극동방송	'09. 10. 30	김장환 이사장	극동대구 FM방송국
(재)원음방송	'09. 10. 30	김윤겸 이사장	원음대구 FM방송국
도로교통공단	'09. 11. 11	정봉채 이사장	교통울산 FM방송국
(재)CBS	'09. 12. 07	이정익 이사장	CBS부산음악 FM방송국

②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인으로 구성

③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총 1천점)	평가지표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계량·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150	계량·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00	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	계량·비계량
5. 재정능력	250	계량·비계량
6. 기술적 능력	100	계량·비계량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50	비계량
8.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	감점	계량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④ 허가 여부 결정 기준

-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하여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5) 2010년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0-37-151)

-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10년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및 티유미디어(주)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① 심사대상

사업자명	대표자	방송구역	사업의 종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이몽룡	전국	일반 위성방송사업(SkyLife)
티유미디어(주)	박병근	전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위성DMB)

②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③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총 1천점)	평가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400	계량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비계량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50	비계량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75(50)	비계량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75(100)	비계량
6.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	50	비계량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75	비계량
8. 시청자 권익보호	75	비계량
9.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 사례	감점	계량
10. 기타 재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50	비계량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

※ ()은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배점으로서, 지역적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곤란한 이동매체이므로 관련 평가배점은 낮추고, 경영 효율화 관련 평가배점은 강화

④ 재허가 여부 결정 기준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6) 2010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0-37-15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10년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심사대상

사업자명	대표자	방송구역
안동문화방송(주)	이윤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KNN	이만수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주)광주방송	박흥석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주)대구방송	이노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강원민방	박용수	강원도
(주)제주방송	김양수	제주도

②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8인으로 구성

③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총 1천점)	평가지표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00	비계량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50	비계량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	비계량
5. 재정적 능력	150	비계량
6. 기술적 능력	150	비계량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100	비계량
8. 시청자 권익보호	50	비계량
9. 시정명령 등 방송법령 위반 사례	감점	계량
10. 기타 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50	비계량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 특히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세부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

※ 지역DMB의 난시청 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자금조달 계획(4번) 및 시설투자 실적·계획(6번)에 높은 배점을 부여

④ 재허가 여부 결정 기준

- 심사 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7. 7.(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7:00)